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61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박상혁 · 허영 · 이해식
문진석 · 김주영 · 이연희
김영환 · 장종태 · 김한규
강경숙 · 박용갑 · 박수현
김우영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통신사, 금융기관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등을 통한 2차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 법체계상 국가기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

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기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액,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및 기금의 관리·운용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또는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
3. “개인정보 침해”란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물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불법유통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침해사고”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제3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
2.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수납액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직전 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직전 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의 지원
2.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정관에 명시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5.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유자금의 운용) 위원회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재무관의 업무
3. 기금지출원: 기금지출관의 업무
4. 기금출납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

제9조(기금계정의 설치) 위원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10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1조(차입금)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및 명령)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영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개인정보침해피

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27년도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운용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